

2020년도 제 1차 청렴옴부즈만 회의 결과보고

(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감사팀, '20.02.25.(화))

□ 목적

-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윤리경영 실천과 청렴문화 정착

□ 개요

- 건 명 : 2020년도 제 1차 청렴옴부즈만 회의
- 일 시 : 2020.02.20.(목), 11:30 ~ 15:00
- 장 소 : 우리원 감사팀 사무실
- 참석대상 : 총 4명
 - 청렴 옴부즈만 2명(000 회계사, 000 변호사)
 - 감사팀 2명(000 팀장, 000 대리)
- 주요내용 : 2020년 노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계획 자문
 - 포상금 규모 확대(안) 관련 의견 조회
 - 포상금 지급시기
 - 홍보채널 관련 의견

□ 주요결과

-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포상금 규모 확대(안) 의견 논의
 - (현 안) 포상금 규모가 크지 않아 신고의 유인이 부족함

- (계 획 안) 부정수급액의 10%(최고 500만원, 최저 20만원)를 포상금으로 지급
 - 기존(부정수급액의 1%(최고 200만원, 최저 10만원) 포상) 포상금 대비 비율 및 금액을 상향
- (주요의견) 신고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
 -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(이하, '보조금법' 제39조2(신고포상금의 지급)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행정 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
 - 포상금 예산 마련 관련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반환받는 보조금에서 포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면 포상금의 범위를 30%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 고려 필요
 - 포상금 환수결정금액의 규모에 따라 일정구간을 정하여 각 구간별 지급율을 차등 적용 의견 제시

○ 부정수급 신고센터 포상금 지급시기 관련 의견 논의

- (현 안) 포상금 지급시기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
- (계 획 안) 포상금 지급시기
 - 부정수급 조사결과(개발원 지자체, 감경찰) 사실로 확인되어 부정수급 통지(환수 통지) 후 부정수급자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
 - 부정수급자가 이의신청·행정심판·행정소송을 제기한 때는 그 결과가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경우
 - 신고자로부터 포상금 신청에 의해 지급을 원칙으로 함
- (주요의견)
 - 실제 보조금을 반환받은 후 포상금 지급이 바람직함
 - 가급적 빠른 시기(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)에 포상금을 지급하여 신고활성화 도모 필요

- 부정수급 신고센터 홍보채널 관련 의견 조희
 - (현 안) 부정수급 신고센터에 대한 인지도 부족
 - (계획안)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 추진
 - 우리원 홈페이지 및 업무시스템 메인화면에 “부정수급 신고센터” 배너 운영
 - 우리원에서 배포되는 각종 인쇄물에 부정수급신고센터 안내
 - 부정수급 신고센터 홍보 포스터 등 인쇄물 제작 및 배포
 - (주요의견) 계획안 포함 다양한 홍보채널 개발을 위해 기관 내 의견수렴 절차 마련 필요

- 노인일자리 부정수급 신고센터 관련 추가 의견
 - (주요의견)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포함 신고사례에 대한 전사 공유 및 홍보활동 추진을 권함

□ **향후일정**

- 청렴옴부즈만 의견을 반영하여 노인일자리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방안 수립 ~2.28.(금)